

신용거래약관 신.구조문 대비표

이 약관은 2025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.

현행	개정(안)	비고
<별첨> 2. 제 5 조제 1 항의 “<별첨>에서 정하는” 비율은 다음과 같다. 신용거래보증금율은 종목증거금율 기준으로 합니다. 증거금율 30%이하 종목은 45%, 증거금율 40% 종목은 50%, 증거금율 50% 종목은 60%, 증거금율 60% 종목은 70%입니다. 신용거래대주보증금율은 현금 100%로 징수합니다.	<별첨> 2. 제 5 조제 1 항의 “<별첨>에서 정하는” 비율은 다음과 같다. 신용거래보증금율은 종목증거금율 기준으로 합니다. 증거금율 40%이하 종목은 45%, 증거금율 50% 종목은 50%, 증거금율 60% 종목은 60%입니다. 신용거래대주보증금율은 현금 100%로 징수합니다.	신용거래 보증금을 변경
4. 제 7 조제 3 항의 “<별첨>에서 정하는”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.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은 종목 증거금율 기준으로 합니다. 30%이하 증거금율 종목은 융자금의 140%, 40% 증거금율 종목은 융자금의 150%, 50% 증거금율 종목은 융자금의 160%, 60% 증거금율 종목은 융자금의 170%로 합니다. 신용대주 담보유지비율은 종목증거금율 관계없이 대주평가금의 120%로 합니다. 신용대주 전용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종목증거금율 관계없이 대주평가금의 105%로 합니다.	4. 제 7 조제 3 항의 “<별첨>에서 정하는”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.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은 종목 증거금율 기준으로 합니다. 40%이하 증거금율 종목은 융자금의 140%, 50% 증거금율 종목은 융자금의 150%, 60% 증거금율 종목은 융자금의 160%로 합니다. 신용대주 담보유지비율은 종목증거금율 관계없이 대주평가금의 120%로 합니다. 신용대주 전용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종목증거금율 관계없이 대주평가금의 105%로 합니다.	담보유지비율 변경